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 · 김성환 · 김한규

한준호 • 민병덕 • 정진욱

김현정 · 김준형 · 민형배

문대림 • 이수진 • 이연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음.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유형 중 하나로 습 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 람사르협약의 국가습지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70년 에서 2015년까지 습지의 약 35%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도 제4차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2016~2020) 결과 2,499개 습지(734.6km) 중 176 개 습지(4.81km)가 매립, 경작, 개발 등으로 소실된 것으로 조사됨.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에 관한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습지교육 등 습지의 보전·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중 "설치 등"을 "설치,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사업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성 안 제3조의2(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습지교육 등 습지의보전의 활동과 관련된 민
	<u>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u> <u>할 수 있다.</u>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	제22조의2(국고 보조)
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 • 이용	
시설의 <u>설치 등</u> 습지보전사업	<u>설치, 습지에 대한 인식</u>
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	<u> 증진사업 등</u>
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